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 주차장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
2.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
3.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
4. 기타 수입

제 3 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.

1. 주차시설의 확충, 관리에 필요한 경비
2. 주·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
3. 기타 주차관련사업

제 4 조(보조 또는 융자)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,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 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 6 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 7 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 8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 부터 적용한다.